

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(제6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신호의<br>종류         | 신호의 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차 량<br>신호등 | 원<br>형<br>등<br>화      | 녹색의<br>등화         | 1.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.<br>2.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황색의<br>등화         | 1.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<br>2.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색의<br>등화         | 1.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.<br>2.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.<br>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.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황색<br>등화의<br>점멸   |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색<br>등화의<br>점멸   |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화<br>살<br>표<br>등<br>화 | 녹색화살<br>표의 등<br>화 |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황색화살<br>표의 등<br>화 |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색화살<br>표의 등<br>화 |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황 색 화             |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살 표 등<br>화의 점<br>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 색 화<br>살 표 등<br>화의 점<br>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<br>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<br>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<br>각<br>형<br>등<br>화 | 녹색화살<br>표의 등<br>화(하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 색×표<br>표 시 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마는 ×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 색×표<br>표시 등<br>화의 점<br>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마는 ×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, 이미 차마의 일부라<br>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<br>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 행<br>신호등            | 녹색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녹색<br>등화의<br>점멸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, 횡단하고 있는 보행<br>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<br>되돌아와야 한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색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<br>전<br>거<br>신<br>호<br>등 | 자전거<br>주행<br>신호등      | 녹 색 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황 색 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자전거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<br>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<br>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<br>한다.<br>2. 자전거등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<br>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적 색 의<br>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자전거등은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<br>한다.<br>2.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<br>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.<br>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황색 등화의 점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적색 등화의 점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자전거 횡단 신호등    | 녹 색 의 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녹색 등 화 의 점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,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등은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.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적 색 의 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버 스 신호등  | 녹색의 등화        |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황색의 등화        |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적색의 등화        |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황색 등화의 점멸     |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적색 등화의 점멸     |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면전차 신호등 | 황색 T자형의 등화    |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·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될 예정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황색 T자형 등화의 점멸 |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·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백색 가로 막대형의 등화 | 노면전차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백색 가로막대형 등화의 점멸 | 노면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백색 점형의 등화       | 노면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. |
| 백색 점형 등화의 점멸    |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백색 세로막대형의 등화    |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백색 사선막대형의 등화    | 노면전차는 백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비고

1.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.
2.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.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"보행자"는 "자전거등"으로 본다.
3.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.